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시설투자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제조업에 한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에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관광숙박업 및 폐기물처리업 등을 추가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경기회복에 기여한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

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영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

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사행일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2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